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77회 임시회
'19. 11. 26.(화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안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회

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9년 10월 31일
○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5일

3. 제안사유

○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(대통령령 제30018호, 2019. 8. 6. 제정)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충청 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4. 주요내용

○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(안 제3조) : 적극행정 실행계획 매년 수립·시행 및 점검

○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(안 제4조) :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, 공무원이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,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심의

○ 지원위원회 구성(안 제5조) : 위원장(행정부지사), 간사(담당부서장), 9명 ~ 15명 위원 성별 비율 고려,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강근)

가. 제출배경

○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6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정부에서 내시한 '적극행정 운영조례(표준안)'을 반영하여 제정한 것임.

나. 주요내용 및 검토 의견

○ 조례안 제2조는 '적극행정' 및 '소극행정'에 대한 용어정의를 하였음.

- 이는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정의에 따른 것으로 타당함.

○ 조례안 제3조는 적극행정 실행의 활성화를 위해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.

- 이는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제7조제1항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 계획수립 시 지역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, 계획 추진사항의 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계획의 효율성 담보를 위한 내용을 포함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됨.

[참고1]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7조

제7조(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1. 적극 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
2.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
3.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
4.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(이하 "사전컨설팅"이라 한다)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5. 소극행정 예방·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

○ 조례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"적극행정지원위원회"의 설치, 기능,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.

- 이는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제10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내용를 며,
- 지난 10월 16일 정책복지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제시되었던, 위원회 구성, 운영과 관련해 세부 규정 사항에 대한 보완 요구를 수렴하여,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, 회의, 위원임기,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.

[참고2]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10조, 제11조

제10조(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(이하 "지원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 제7조에 따른 **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**에 관한 사항
2. 제12조에 따라 **공무원이 지원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**한 사항
3. 제13조에 따른 **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** 등에 관한 사항
4.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
5.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·추진에 관한 사항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(시·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. 이하 "인사위원회"라 한다)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1조(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지원위원회는 **위원장 1명**을 포함하여 **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**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원의 **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**으로 한다.

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: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·**행정부지사**,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
2. 시·군·구의 경우: 부시장·부군수·부구청장 또는 민간위원

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,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.

④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○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의 범위 안에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적, 내용적으로 타당하며, 절차상으로도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(20일)을 거친 바 문제가 없음.